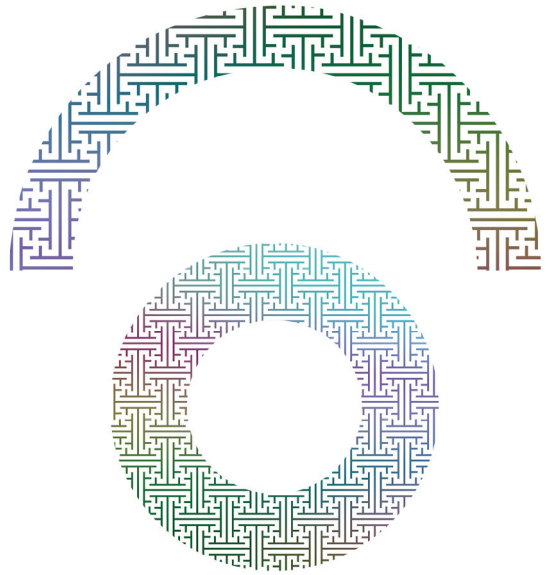


정책연구 2016-1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보완



연구진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이러한 지방이양의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래로 20년 넘게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의 법령 변동 사항 및 이양 사무 현황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1차적으로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 1,982개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현행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를 추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리고 그간의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지방이양 사무의 분류

- 지방으로 이양된 1,982개 사무를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범위)에 따라 코딩하여 분류함

- 지방이양 사무의 코딩은 1단계 [사무] 코딩과 2단계 [단위사무] 코딩으로 진행함
 - 1단계: [사무] 코딩 및 2단계 [단위사무] 코딩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분류함

□ 지방이양 사무 분석결과: 추가 사무 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추가 사무 없음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경우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분석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의 경우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공유림관리,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경우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자연보호 활동,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의 경우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 1,982개만 분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를 보완할 때에는 그간의 법령 변동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는 지방이양 사무 및 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제3절 연구의 체계	5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 현황 분석	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현황	9
제2절 지방이양 완료된 사무 현황 분석	28
제3장 지방이양 완료 사무 분석	33
제1절 지방이양 사무의 코딩(분류) 및 분석 방법 ..	35
1. 지방이양 사무의 코딩(분류) 방법	35
2. 사무 분류결과의 분석 방법	38
제2절 지방이양 사무의 분류 및 분석	40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분석	41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분석	44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분석 ..	77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분석	110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분석	158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분석	169
7.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 종합	173
8.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 종합	176
제4장 분석결과 종합	17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181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181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83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8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86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87
7. 분석결과의 종합	187
참고문헌	188



표 차례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9
<표 2-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10
<표 2-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5
<표 2-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9
<표 2-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25
<표 2-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27
<표 2-7> 연도별 이양완료 사무 숫자	28
<표 2-8> 부서 별 이양 대상 전체 사무 대비 이양완료 사무 숫자	28
<표 2-9> 세부 이양유형별 이양완료 사무 숫자	29
<표 2-10> 이양완료 사무의 수행 기관	31
<표 3-1> 지방이양 완료 사무의 코딩표	35
<표 3-2> 지방이양 완료 사무의 코딩 결과(엑셀표 예시)	38
<표 3-3> 지방이양 사무 유형별 단위사무 수	40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41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단위사무 분류	41
<표 3-6> 기타 단위사무 분류	43
<표 3-7>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44
<표 3-8>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45
<표 3-9>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46
<표 3-10>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사무 비교	47
<표 3-11>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사무 비교	48

<표 3-12>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시도)	49
<표 3-13>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시군구)	50
<표 3-14>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시도 및 시군구)	53
<표 3-15>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무(시도)	55
<표 3-16>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무(시군구)	57
<표 3-17>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무(시도 및 시군구)	60
<표 3-18>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시도)	62
<표 3-19>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시군구)	62
<표 3-20>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시도 및 시군구)	64
<표 3-21>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시도)	65
<표 3-22>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시군구)	65
<표 3-23>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사무(시도)	67
<표 3-24>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사무	68
<표 3-25>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사무	69
<표 3-26>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사무(시도)	70
<표 3-27>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사무(시군구)	72
<표 3-28>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무	73
<표 3-29>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74
<표 3-30>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76



<표 3-31>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77
<표 3-3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 비교(시·도)	78
<표 3-33>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 비교(시·군·구)	80
<표 3-34>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83
<표 3-35> 농업자재의 관리 사무 비교(시·도)	84
<표 3-36> 농업자재의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84
<표 3-37>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사무 비교(시·도)	85
<표 3-38>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사무 비교(시·군·구)	85
<표 3-39> 공유림관리 사무 비교(시·도)	86
<표 3-40> 공유림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88
<표 3-41> 공유림관리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89
<표 3-42>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사무 비교(시·도)	90
<표 3-43>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사무 비교(시·군·구)	90
<표 3-44>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 비교(시·도)	91
<표 3-45>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 비교(시·군·구)	92
<표 3-46>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92
<표 3-47>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 비교(시·도)	93
<표 3-48>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 비교(시·군·구)	95
<표 3-49>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 비교 (시도 및 시군구)	96
<표 3-50>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사무 비교(시·도)	97

<표 3-51>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사무 비교(시·군·구)	100
<표 3-52>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사무 비교 (시도 및 시군구)	102
<표 3-53>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 비교(시·도)	103
<표 3-54>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	103
<표 3-55>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사무 비교(시·도)	104
<표 3-56>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105
<표 3-57>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106
<표 3-58>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정리	108
<표 3-59>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10
<표 3-60>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도) ..	112
<표 3-61>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군·구)	116
<표 3-6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117
<표 3-6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도) ..	118
<표 3-6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군·구) ..	119
<표 3-65>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사무 비교(시·도)	120
<표 3-66>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121
<표 3-67>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 비교(시·도)	122



<표 3-68>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 비교(시·군·구)	123
<표 3-69>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125
<표 3-70> 자연보호 활동 사무 비교(시·도)	126
<표 3-71> 자연보호 활동 사무 비교(시·군·구)	131
<표 3-72> 자연보호 활동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	133
<표 3-73>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사무 비교(시·도)	134
<표 3-74>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135
<표 3-75>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137
<표 3-76>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138
<표 3-77>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	139
<표 3-78>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140
<표 3-79>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	141
<표 3-80>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	143
<표 3-81>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 (시·도 및 시·군·구)	144
<표 3-82>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145
<표 3-83>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146

<표 3-84>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 비교(시·도) · 147

<표 3-85>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148

<표 3-86>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55

<표 3-87>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158

<표 3-8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사무 비교(시·도) 159

<표 3-8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사무 비교(시·군·구) 160

<표 3-90>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
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161

<표 3-91>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
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163

<표 3-92>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
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 164

<표 3-93>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165

<표 3-9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 비교(시·도) · 166

<표 3-9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 비교
(시·도 및 시·군·구) 167

<표 3-96>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168

<표 3-97>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69



<표 3-98>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	170
<표 3-99>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사무 비교(시·도)	171
<표 3-100>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사무 비교(시·군·구)	171
<표 3-101>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	173
<표 3-102>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	174
<표 3-103>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는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76
<표 3-104>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무	176
<표 3-105>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단위사무	176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181
<표 4-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181
<표 4-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83
<표 4-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84
<표 4-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186
<표 4-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87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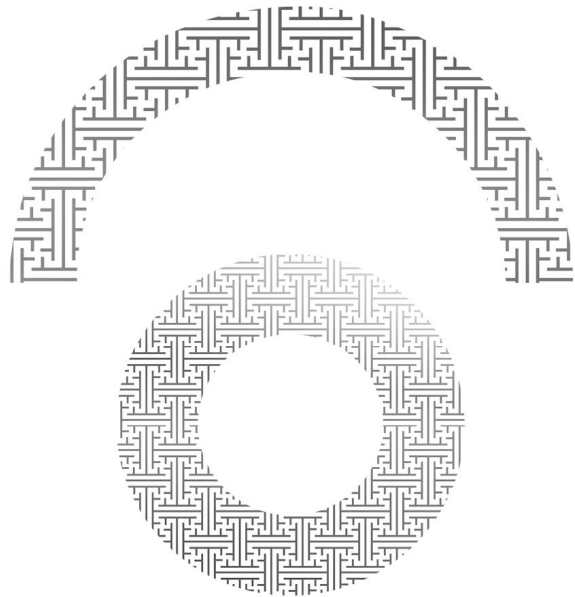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이러한 지방이양의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래로 20년 넘게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의 법령 변동 사항 및 이양 사무 현황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1차적으로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 1,982개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현행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를 추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를 보완하고자 함)
 - － 법령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보완에 반영
-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본 연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정리한 지방이양 완료사무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음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200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 1,982건을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사무와 지방이양 완료된 단위사무의 비교·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 보완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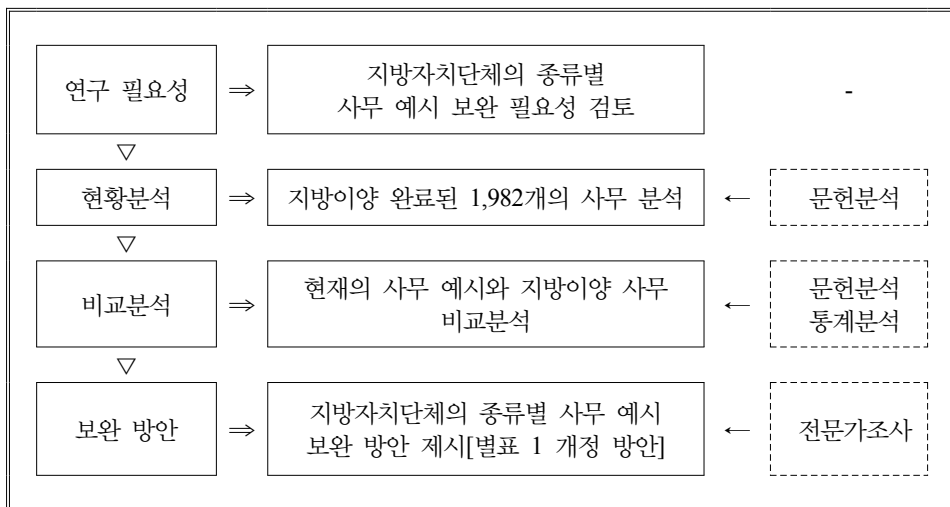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관련 문헌 및 관련 법령 등 분석
- 통계분석
 - － 2016년 현재 지방이양 완료된 사무 1,982건에 대한 통계분석
- 전문가 면접조사
 -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사무 예시 보완방안 점검

제3절 연구의 체계

- 전체 연구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연구 분야별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며, 연구의 체계도는 <그림 1-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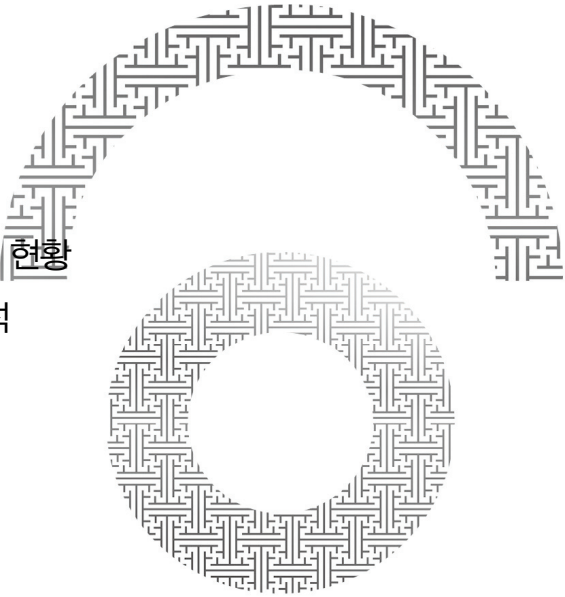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 현황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현황**

제2절 지방이양 완료된 사무 현황 분석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 현황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현황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에서는 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분류 및 예시 단위사무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표 2-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 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업사업, 수업료 지급, 장제보호비 지급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 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보호조치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 단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0) 불우청소년보호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23)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5)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마. 국민건강증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 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역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 2)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3)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4)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5) 분묘의 일제신고 6) 시체운반업 허가	5)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 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 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차.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 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	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단의 설립·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1)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표 2-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가. 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4)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3)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운영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다. 농업자재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용자금 관리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 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바. 공유림관리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施業)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 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
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4) 종축장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증식·보호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야. 가축전염병 예방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카. 중소기업의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 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 광민예품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 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 수립·시행 2)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 3) 토산품 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표 2-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가. 지역개발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사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라.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1) 시·군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시·군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 구조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 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4)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7)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 4)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사. 자연보호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0) 자연보호 지도·계몽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감시(자갈채취단속 등)	관리 6) 하천감시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조정 2)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시행 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7) 관광휴양지의 관리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12) 관광휴양지의 관리 13)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립·운영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시장 개설허가 14) 시장관리자 지정

<표 2-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반출 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 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 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표 2-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사무	시·도 사무(예시)	시·군·구 사무(예시)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 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제2절 지방이양 완료된 사무 현황 분석

- 2000년 이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방이양 확정연도별 지방이양 완료 사무 건수는 총 1,982개이며, 연도별 지방이양 사무 완료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2-7> 연도별 이양완료 사무 숫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이양완료 사무	2	92	138	172	204	436	44	131	118	81	135	232	197	1,982

- 지방이양이 완료된 1,982개 사무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 328개, 국토부 313개, 보건복지부 203개, 농림축산식품부 170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8> 부서 별 이양 대상 전체 사무 대비 이양완료 사무 숫자

부처	전체사무	완료사무
경찰청	14	2
고용노동부	84	26
공정거래위원회	16	14
교육부	141	79
국가정보원	1	0
국민안전처	65	47
국토교통부	552	313
금융위원회	12	0
기획재정부	31	23
농림축산식품부	195	170
농촌진흥청	2	1
문화재청	28	11
문화체육관광부	142	111

부처	전체사무	완료사무
미래창조과학부	52	12
방송통신위원회	33	25
법무부	2	2
보건복지부	237	203
산림청	186	154
산업통상자원부	208	135
식품의약품안전처	97	63
여성가족부	83	30
외교부	9	9
중소기업청	33	11
통계청	1	1
통일부	4	4
특허청	4	4
해양수산부	305	138
행정자치부	85	66
환경부	479	328
합계	3,101	1,982

- 지방이양 완료된 1,982개 사무의 이양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 시도 775개, 시도 → 시군구 485개, 국가 → 국가 및 시도 128개, 국가 → 시군구 103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9> 세부 이양유형별 이양완료 사무 숫자

이양방향 구분	이양완료사무 수
교육청 → 교육지원청	2
국가, 교육청 → 국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2
국가, 도 → 시도	2
국가, 시군구 → 시군구	63
국가, 시도, 시군구 → 시군구	10

이양방향 구분	이양완료사무 수
국가,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	12
국가, 시도, 시군구 → 특별·광역시, 시군	1
국가, 시도 → 광역시, 시군	10
국가, 시도 → 국가, 시군구	25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7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40
국가, 시도 → 국가, 특별·광역시, 시군	9
국가, 시도 → 시군구	12
국가, 시도 → 시도	21
국가, 시도 → 시도, 시군구	7
국가 → 교육청	39
국가 → 국가, 교육청	6
국가 → 국가, 도	3
국가 → 국가, 시군구	7
국가 → 국가, 시도	128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16
국가 → 국가, 특별·광역시	1
국가 → 국가, 특별·광역시, 시군	3
국가 → 도	2
국가 → 사무폐지	4
국가 → 시군구	103
국가 → 시군구, 특별자치도	1
국가 → 시도	775
국가 → 시도, 교육청	4
국가 → 시도, 시군구	22
국가 → 특별·광역시, 시군	2
국가 → 특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1
국가 → 특별자치도, 시군구	8
시도, 시군구 → 시군구	26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2
시도 → 시군구	485

이양방향 구분	이양완료사무 수
시도 → 시도, 시군구	13
시도 → 시도, 특별시	64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6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구	2
지자체 → 국가	2
특별·광역시 → 자치구	1
특별·광역시, 시군 → 시군구	3
합계	1,982

○ 지방이양 완료된 1,982개 사무의 이양 유형별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종합해 살펴보면,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933개,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734개,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112개로 나타남

－ 교육청 이관, 사무폐지 등 기타 이양 유형은 203개로 나타남

<표 2-10> 이양완료 사무의 수행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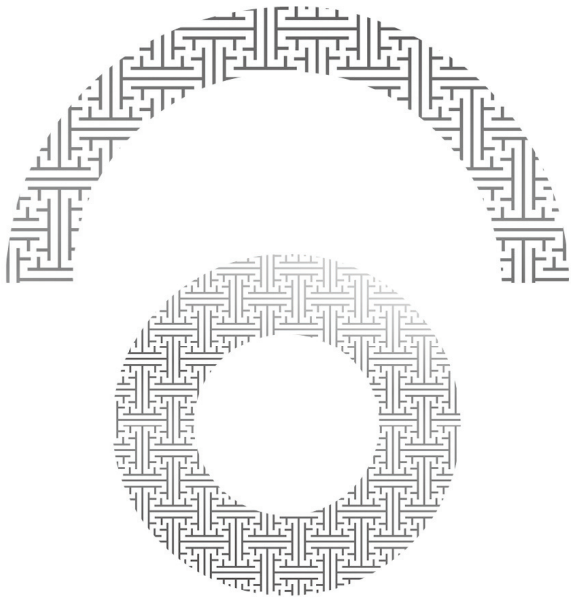
(최종) 이양방향 구분	이양완료사무 수
시도	933
시·군·구	734
시도 및 시·군·구	112
기타 (교육청 및 사무폐지 등)	203
합계	1,982

제3장

지방이양 완료 사무 분석

제1절 지방이양 사무의 코딩(분류) 및
분석 방법

제2절 지방이양 사무의 분류 및 분석



제3장

지방이양 완료 사무 분석

제1절 지방이양 사무의 코딩(분류) 및 분석 방법

1. 지방이양 사무의 코딩(분류) 방법

- 지방으로 이양된 1,982개 사무를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코딩하여 분류하고자 함
 - 사무 및 단위사무 2단계로 코딩하여 분류
- 지방이양 사무를 분류하기 위하여 지방이양 사무의 해당 법 조문을 복사하여 엑셀표의 <조문> 항목에 붙여넣기를 하고,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무 및 단위사무를 분류하고자 함
- 지방이양 사무의 코딩은 1단계 사무코딩과 2단계 단위사무 코딩으로 진행하고자 함

[1단계 : 사무 코딩] - 이양 사무별 [사무] 코딩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표 3-1> 지방이양 완료 사무의 코딩표

코딩번호	사무명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1~6에 속하지 않은 사무)
8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무(교육청 이양, 사무폐지 등)

[2단계 : 단위사무 코딩] - 이양 사무별 [단위사무] 코딩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코딩함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99. 기타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3.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 4.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 5. 국민건강증진사업
- 6.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7.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8.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9.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 10.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 11.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12.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99. 기타 단위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1. 늪지·보(沔)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3. 농업자재의 관리
- 4.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5.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6. 공유림관리

7.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8. 가축전염병 예방
9.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0.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1. 중소기업의 육성
12.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3.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99. 기타 단위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 지역개발사업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5.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6.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7. 자연보호 활동
8.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9.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0.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11.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2.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13.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4.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5.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99. 기타 단위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2.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3.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5.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99. 기타 사단위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1.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2.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99. 기타 단위사무

2. 사무 분류결과의 분석 방법

- 위의 코딩(분류) 방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1,982개 사무를 아래와 같이 [엑셀표]에서 정리
 - 먼저 **조문**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사무와 단위사무**를 코딩함
 -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마지막 [논의필요]란에 체크(○)

<표 3-2> 지방이양 원료 사무의 코딩 결과(엑셀표 예시)

지방이양 단위사무명	근거 법령	조항	조문	사무 분류	단위 사무 분류	논의 필요
도로 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6조 제1항	제6조 제1항: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시도(市道)를 말한다]·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지방이양 단위사무명	근거 법령	조항	조문	사무 분류	단위 사무 분류	논의 필요
도로 사업계획의 보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1항: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원(財源)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	
도로정비 계획수립 보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4	
.						
.						

○ 1단계 사무 분류결과에 대한 분석

- 유형별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 분석
 - 사무별 단위사무로 재분류
- 유형별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기타 사무) 분석
 - 지방자치법 상 [사무] 유형 분류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단계 단위사무 분류결과에 대한 분석

- 지방자치법 상 사무(현행 [별표1]의 사무)에 해당되는 단위사무 분석
 - 현행 [별표1]의 사무예시와 비교·분석 후 단위사무 예시에 추가 여부 판단
 - 시·도 및 시·군·구 사무예시에 추가
- 지방자치법 상 사무(현행 [별표1]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단위사무(기타 단위사무) 분석
 - 지방자치법 상 [단위사무] 유형 분류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제2절 지방이양 사무의 분류 및 분석

- 지방이양 완료된 1,982개 사무를 지방이양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단위사무 738개,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단위사무 474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단위사무 461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단위사무 119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에 해당하는 단위사무 44개,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단위사무 41개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단위사무는 51개로 나타남
 - 그리고 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사무폐지 등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되지 않은 그 밖의 사무 54개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 54개를 제외하고, 1,928개의 단위사무를 분석함

<표 3-3> 지방이양 사무 유형별 단위사무 수

코드 구분 (대분류)		건수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4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461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74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738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19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41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	51
8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무(교육청 이양, 사무폐지 등)	54
합계		1,982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의 단위사무 44개를 분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과 관련된 단위사무 31개, 기타 단위사무 13개로 나타남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31
99	기타 사무	13
합계		4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관련 단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3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2개, 시·군·구 이양사무 2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3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4개 단위사무는 제외
- 분석결과
 - 사무 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개정 시 검토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단위사무 분류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사무 (지방자치법)
- 5급이상 기술직렬 지방공무원 정원의 다른직렬로 조정승인	-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승인	- 사무인계의 거부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사무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급 - 지방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정원책정 승인 -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군조정 - 6급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승인 -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승인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차중·차형(배기량) 책정권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최단운행기준연한 책정권 - 타업무의 겸직허가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변경 승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교육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기구 설치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인계의 보고 -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승인 - 별정직지방공무원 정원변경 조정협의 - 지방의회 선결처분 보고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설치, 변경 협의 -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설치 승인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 승인 -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의 설치 승인 -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승인 - 금고에 대한 검사 - 특별재물조사의 실시 - 한시기구 설치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12개 사무	2개 사무	13개 사무	-

2) 기타 사무 관련 단위사무

- 기타 1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8개, 시·군·구 이양사무 3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2개 단위사무는 제외
- 분석결과
 - 사무 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개정 시 검토

<표 3-6> 기타 단위사무 분류

시·도 이양사무	시·군·구 이양사무	시도 및 시군구 사무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을 통계청소관 국가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같은하는 관직의 지정에 관 한 권한 - 해외이주 알선료, 수수료 책 정 신고 -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청문 - 해외이주 알선업 사업장 이 전 등의 신고 -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 -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 취 소 등 - 해외이주 알선업의 변경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귀국의 신고 - 해외이주 신고 - 해외이주의 포기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 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 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 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 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 사 및 통계의 작성
8개 사무	3개 사무	-

3)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 교육청 이관, 사무 폐지 등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6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4개, 기타 단위사무 2개로 나타남

<표 3-7>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기타 단위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요원의 자격에 관한 협의 - 교육훈련 관련자료 및 교육훈련 실시요구 - 지방공무원의 국내위탁훈련 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간 6급이상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담위원 위촉 - 행정상담위원 해촉
4개 사무	2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분석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단위사무 461개를 분류한 결과, 국민건강 증진 관련 단위사무 136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관련 단위사무 77개,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관련 단위사무 67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단위사무는 45개로 나타남

<표 3-8>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0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20
3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3
4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77
5	국민건강증진사업	136
6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39
7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25
8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0
9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48
10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67
11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12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0
99	기타 단위사무	45
합계		461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대한 단위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대한 단위사무는 없음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관련 단위사무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무에 해당되는 20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20개 단위사무 모두 시·도 이양사무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무에 대한 분석결과
⇒ 현행 시·도 사무예시와의 비교·분석결과 추가 사무 예시 없음

<표 3-9>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사회복지사업법)		
- 기본재산의 처분등에 관한 허가	3)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2)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2)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의 허가	2)	
- 임원의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	3)	
- 임원의 해임 명령	3)	
- 임원임면보고	3)	
- 임원중 감사의 추천	3)	
-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3)	
- 감사의 추천	3)	
-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3)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	2)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2)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3)	
- 임시이사의 선임	3)	
-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3)	
- 임원의 해임명령	3)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3)	
20개 사무		-

3)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위사무

-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사무에 해당되는 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군·구 이양사무 1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2개로 나타남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현행 시·군·구 사무 예시와의 비교·분석결과 추가 사무 예시 없음

<표 3-10>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사무 비교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 신청·접수	1)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애보호비 지급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1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현행 시·도 및 시·군·구 사무 예시와의 비교·분석결과 추가 사무 예시 없음

<표 3-11>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사무 비교

시·도 사무(예시)	분석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진료 자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	2), 3) 2)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지급, 장애보호비 지급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		2개 사무		-

4)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관련 단위사무

-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되는 77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2개, 시·군·구 이양사무 55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8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2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에서 추가 필요
 - 가족친화 조성사업 시행(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 고령자 고용·구인·구직활동 및 능력개발 지원(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

<표 3-12>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추가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추가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수집	추가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추가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 고령자 취업 적응훈련 실시	추가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영유아보육법) - 보수교육 훈련의 위탁	8)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실시	8)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8)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 교육훈련의 위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6) 6) 9) 8)	1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3)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12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부과, 징수 등)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지원(청소년활동 진흥법-법인 또는 단체의 조성계획 수립 등)

<표 3-13>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보고명령 및 운영상황 조사 또는 검사 -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인가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접수 -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신고 접수	추가 추가 추가 추가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업무의 정지, 폐지명령 및 인가의 취소	추가	
- 보호시설 설치신고 접수	추가	
- 상담소, 보호시설의 감독	추가	
- 상담소, 보호시설의 폐쇄 등	추가	
- 상담소, 보호시설의 휴지, 폐지신고 접수	추가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접수	추가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추가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청문	추가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노인복지법)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 의 입소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설치 신고	4)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4)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4)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비용수납 신고	4)	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
-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4)	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 청문	4)	20) 불우청소년보호
- 노인전문병원 개설 허가	4)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노인전문병원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 신고	4)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아동복지법)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 시설보호아동 퇴소신고 접수	9)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고 접수사무	9)	25)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 과태료	7)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 보고, 검사 등	7)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 사고보고의무및 사고조사	7)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안전감시원 운영	7)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7)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 안전교육	7)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 안전진단의 실시	7)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 자료의 제출과 보고	7)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중대한 사고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7)	
- 시정명령	21)	
- 청문	21)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	21)	
-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	21)	
- 폐지신고 및 폐지제한 등	21)	
- 허가취소 및 운영정지	21)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18)	
- 과징금의 부과	18)	
- 과태료의 부과	18)	
- 시정명령	18)	
- 이유명시	18)	
-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유통 및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과 출입시설 신고의 수리 및 포상	18)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물질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한 보고와 자료 제출요구	18)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물질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과 관련된 검사 및 조사	18)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 또는 파기	18)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명령	18)	
- 청소년이 소지하거나 소유한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수거,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	18)	
- 청소년이 소지하거나 소유한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처분의 관련장부 기재	18)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특별한 학식, 경험있는 자에 대한 감정의뢰 (청소년활동 진흥법) - 법인 또는 단체의 조성계획 승인 -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수련지구의 지정 및 고시 - 조성계획의 고시	18) 추가 추가 추가 추가	
55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가족친화 환경 조성(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명예가정의 레지도원 위촉 등)

<표 3-14>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추가 추가 추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추가 추가 추가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시·도 사무(예시)	판단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3)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추가 6) 6) 2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아동복지법) - 아동전용시설 입장료, 이용료 감면권장 - 아동전용시설 입장료, 이용료 징수승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 우수수련거리의 선정	추가 7) 7) 21)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 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20) 불우청소년보호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시·군·구 단위)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 (수첩의 발급 등) 29)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		8개 사무		-

5) 국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무

-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무에 해당되는 136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49개, 시·군·구 이양사무 79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7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등)
 - 먹는 샘물의 관리(먹는 물 관리법-먹는 샘물 수입, 판매제한 또는 시정명령 등)

<표 3-15>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무(시도)

시·도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추가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 과징금 처분	추가		
- 과태료	추가		
- 시설의 개수 명령 등	추가		
- 시정 명령	추가		
- 영업의 승계	추가		
- 영업의 허가 취소 등	추가		
- 청문	추가		
- 폐기 처분 등	추가		
- 폐쇄 조치 등	추가		
- 폐업 및 신고사항의 변경	추가		
- 포상금 지급	추가		
- 품목의 제조 정지 등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 관할지역내에서의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1)		

시·도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담배사업법)		
- 담배 수입판매업의 등록	1)	
- 담배 수입판매업의 변경등록	1)	
- 보고 및 관계장부 등의 확인	1)	
- 수입판매업 등록의 취소	1)	
- 수입판매업 영업의 정지명령	1)	
- 수입판매업의 휴·폐업 신고접수	1)	
- 청문	1)	
(먹는 물 관리법)		
- 먹는샘물 수입, 판매제한 또는 시정명령 등	추가	
- 6개월이상 휴업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취소 및 영업장 폐쇄	추가	
- 과징금 부과	추가	
- 과징금 체납처분	추가	
- 과태료 부과	추가	
-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	추가	
- 과태료 체납처분		
- 관할법원의 통보	추가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변경등록	추가	
- 먹는샘물 제조업 조건부허가	추가	
- 먹는샘물 제조업 조건부허가의 취소	추가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추가	
-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와 용기·포장등의 압류 또는 폐기	추가	
-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추가	
-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	추가	
- 사업장 폐쇄의 통지	추가	
- 수처리 제조업 등록 및 변경등록	추가	
-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추가	
-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추가	
-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	추가	
- 영업정지 위반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취소	추가	

시·도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및 영업장 폐쇄 - 영업허가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청문 - 취소량제한 등 허가조건 부여 - 취수 제한 또는 중단조치 - 수질측정결과 제출 - 지하수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수질측정 결과분석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49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등)
- 마약류의 관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등)
- 약사의 관리(약사법-개수명령 등)
- 시체의 관리(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표 3-16>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무(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지정 명령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폐업·변경 신고 - 과징금 처분 등 - 과태료 부과·징수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봉인의 해제	추가	
- 시설의 개수명령 등	추가	
- 영업소의 폐쇄 명령	추가	
- 영업의 허가취소 등	추가	
- 이익제기에 대한 관할 법원에 사실 통보	추가	
- 청문	추가	
- 폐기처분 조치 등	추가	
- 출입·검사·수거 등	추가	
- 폐쇄조치의 서명통지	추가	
- 포상금 지급	추가	
(담배사업법)		
-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1)	
- 담배도매업의 등록	1)	
- 담배도매업의 변경등록	1)	
- 담배의 판매제한 또는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명령·조치	1)	
- 도매업 영업의 정지명령	1)	
- 도매업의 휴·폐업 신고접수	1)	
- 보고 및 관계장부 등의 확인	1)	
- 청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추가	
- 과징금 부과	추가	
-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추가	
- 마약류 도매 보고	추가	
- 마약류 도매업자의 마약류 판매 승인	추가	
- 마약류 도매업자의 항정신성 의약품 판매 승인	추가	
- 마약류 소매보고	추가	
-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추가	
-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등 사실 신고	추가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 휴업, 재개신고	추가	
-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추가	
- 사고 마약류의 사고 사유 보고	추가	
- 업무보고 등	추가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승인	추가	
- 청문	추가	
- 출입검사와 수거	추가	
- 폐기명령 등	추가	
-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	추가	
- 허가등의 제한	추가	
- 허가중의 교부 및 재교부	추가	
- 과징금 부과	추가	
- 마약 도매 보고	추가	
- 마약 소매 보고	추가	
-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신고	추가	
-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및 변경지정	추가	
- 마약류 도매업자의 마약 판매승인	추가	
- 마약류 도매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승인	추가	
- 마약류 취급(도매업)자 허가중의 교부및 재교부	추가	
- 마약류 취급(도매업)자의 폐업,휴업, 재개업의 신고	추가	
- 마약류 취급(도매업)자의 허가및 변경허가	추가	
-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등 사실 신고	추가	
- 업무보고 등	추가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승인	추가	
- 청문	추가	
- 폐기명령 등	추가	
-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추가	
- 허가 등의 제한	추가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부과·징수	추가	
- 시체해부 명령	추가	
- 시체해부 지시	추가	
- 이상 발견시의 보고	추가	
(약사법)		
- 개수명령	추가	
- 과징금 처분	추가	
- 보고와 검사	추가	
- 불량약품 등의 폐기 명령	추가	
- 업무 개시 명령	추가	
-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	추가	
-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추가	
- 청문	추가	
-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추가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지정	추가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사후관리	추가	
-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추가	
79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응급의료 관리 및 지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등)

<표 3-17>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무(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1)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계획수립의 협조	1)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시·도 사무(예시)	분석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 추가 추가 추가 4) 4)	- 연도별 건강가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업무 종사 명령 - 의료시설 제공, 응급환자 이송등의 업무종사명령 - 중앙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식품위생법) - 명예식품위생감사원 위촉 - 명예식품위생감사원 해촉	1) 추가 추가 추가 4) 4)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7개 사무		

6)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단위사무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에 해당되는 39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6개, 시·군·구 이양사무 32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개로 나타남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동물병원 및 동물치료소 관리

<표 3-18>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수의사법) -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의 검사	추가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역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문화재 보호법) - 동물치료소 지정	추가	
-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추가	
- 동물치료소 지정서 교부	추가	
-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교부신청	추가	
- 동물치료소 지정추천서 제출	추가	
6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동물병원 및 동물치료소 관리
- 지역의료기관의 설치 및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표 3-19>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 개성공업지구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추가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수의사법) - 동물병원 개설신고	추가	
- 동물병원 휴·폐업 신고	추가	
-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의 정지	추가	
- 신고사항 변경신고	추가	
- 관리약사의 변경신고	추가	
(의료법) - 개설허가의 취소 등	추가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과징금 처분	추가	
- 과태료 처분	추가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추가	
- 청문	추가	
- 폐업·휴업신고	추가	
(정신보건법)		
- 과태료 부과·징수	추가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추가	
- 시설폐쇄	추가	
- 시정명령	추가	
- 청문	추가	
- 폐지·휴지·재개신고	추가	
- 가퇴원 조치	추가	
- 가퇴원자의 경과 관찰	추가	
- 가퇴원자의 재입원 조치	추가	
- 계속입원 조치	추가	
- 계속입원 조치 통보	추가	
-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추가	
- 계속입원치료 의뢰 및 홍보	추가	
- 입원조치 결과 통보	추가	
- 입원조치의 해제	추가	
- 정신질환자 진단 및 보호신청	추가	
- 정신질환자 진단의뢰	추가	
-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	추가	
- 퇴원심사등의 청구	추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추가	
32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표 3-20>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 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추가	(정신보건법) -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시설 보호 조치	추가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1개 사무		-

7)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단위사무

-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에 해당되는 25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2개, 시·군·구 이양사무 22개로 나타남
 - 기타 단위사무 1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사무예시 추가 없음

<표 3-21>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식물방역법) - 방제명령 이행여부에 관한 감독 -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 1)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출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2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사무예시 추가 없음

<표 3-22>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결핵예방법) - 신생아 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예방접종의 공고 - 보상금(임상연구비와 결핵전염위험성) 지급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실시 - 사립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접수 - 소독실시 사항의 기록 및 보고 등 -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시정명령 - 영업의 정지·폐쇄명령 - 영업의 휴업 등 신고	2) 2) 2) 2) 2) 2) 3) 3) 3) 3) 3) 3) 3)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청문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감염자에 대한 치료강제처분	2)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자 전문진료기관 치료 지시	2)	
(전염병예방령)		
-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 등	2)	
- 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	2)	
-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2)	
- 과태료 처분	2)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 입원명령	2)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2)	
22개 사무		-

8)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단위사무

- 이양사무 없음

9)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관련 단위사무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사무에 해당되는 48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23개, 시·군·구 이양사무 20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5개로 나타남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23>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사무(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 통보	1)	
(식품위생법)		
- 과징금 처분	1)	
- 시설의 개수 명령 등	1)	
- 시정 명령	1)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및 변경	1)	
- 영업의 승계	1)	
- 위반사실의 공표	1)	
- 위해식품 등의 공표	1)	
- 위해식품 등의 회수	1)	
- 청문	1)	
- 폐기 처분 등	1)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폐쇄조치 등	1)	
-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	
- 영업의 제한	1)	
- 과징금 처분	1)	
-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 실적 등 보고	1)	
-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	1)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	
- 청문	1)	
- 폐쇄 조치	1)	
- 허가 취소	1)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1)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위탁	1)	
23개 사무	-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24>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사무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 실시	1)	
-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	1)	
-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1)	
- 면허증의 재교부 등	1)	
- 이·미용사의 면허신청	1)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 지도계획 수립·시행
- 이·미용사의 면허증 반납	1)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시 청문	1)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 이·미용사의 행정처분	1)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우수업소 지정	2)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우수업소 취소	2)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 접객업소의 모범업소 지정	6)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 접객업소의 모범업소 취소	6)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 식품접객업 등 허가 및 등록취소 등의 요청	5)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1)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 조리사 면허증 반납	1)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1)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 조리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1)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 조리사의 면허	1)	
- 조리사의 면허취소등	1)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	
20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25>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사무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	1)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 지도계획 수립·시행
	1)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1)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1)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1)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감시	1)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1)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포상 실시	1)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
		5개 사무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

10)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관련 단위사무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사무에 해당되는 67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40개, 시·군·구 이양사무 7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20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26>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사무(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5)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	5)	
- 시군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5)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 시군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5)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등)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5)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취소	5)	
(약취방지법)		
- 약취실태조사 결과보고	5)	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폐기물관리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3)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6)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7)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
- 보고검사 등	3)	
- 보고서 제출	3)	
- 비용명세서의 수리	3)	
- 사용제한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3)	
-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3)	
-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3)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 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3)	
-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3)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3)	
- 사후관리제외 대상 시설의 인정	3)	
-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변경확인	3)	
-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3)	
-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3)	
-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대 집행	3)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3)	
- 폐기물의 회수 조치	3)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3)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3)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3)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	3)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 과징금 처분	3)	
- 폐기물처리업	3)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3)	
- 허가의 취소 등	3)	
- 주민지원기금의조성(국가사무 제외)	3)	
- 등록의 취소 등	3)	
- 폐수처리업의 등록	3)	
(대기환경보전법)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공급·판매, 사용금지	3)	
40개 사무	-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27>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사무(시군구)

시·군·구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취소 -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등 -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 -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13)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13)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13)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13)	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13)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13)	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13)	8)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13)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3)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3)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糞場)의 설치·유지관리
7개 사무		-

11)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단위사무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무에 해당되는 1개의 단위사무는 시·군·구 이양사무로 나타남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28〉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무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지방공기업법) -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의 일정기준이하의 사채 발행승인	4)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1개 사무		-

12)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단위사무

- 이양사무 없음

13) 기타 단위사무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로 분류된 45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도 이양사무 7개, 시·군·구 이양사무 33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5개로 나타남
- 분석결과
 - 사무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개정 시 검토 필요

<표 3-29>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 제조기준 규격·표시기준 등 증명서류 제출 -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지도감독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의 위촉 - 공수의 지도감독 - 선도보호조치 - 개선결과보고 - 검사대행자의 등록 - 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과태료 - 이동소음규제지역 변경지정 -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 유통관련업자(종합계임장) 등록(지정),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 책정 - 대집행 - 명령이행사항 접수 및 이행상태 확인 -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 - 오염토양 개선사업 행,재정 지원 요청 -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 승인 -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명령 및 토양관련 전문기관 감리자 지정 등 - 청문 - 토양보전 대책계획의 수립, 시행 -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 요청 - 토양보전 대책지역내에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보고 -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토지이용 등의 제한 -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 명령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명령 - 토양정밀조사 명령 - 토양정밀조사결과 보고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등의 보고 - 과징금 처분 - 업무정지 명령 - 영업소 이전허가 - 청문 - 한약업사의 허가 - 허가대장 비치 및 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변경허가 - 허가취소	
7개 사무	33개 사무	5개 사무

※ 기타 이양유형은 없음

14)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정리

<표 3-30>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사무명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없음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없음
3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 없음
4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5	국민건강증진사업	-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의 교육
6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없음
7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명예기축방역감시원의 위촉
8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없음
9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 없음
10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악취관리 실태 조사 - 악취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고시 및 보고 - 악취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 - 개선계획서 제출에 따른 개선명령 유보 - 과징금 체납 징수 - 악취검사 의뢰 - 악취검사기관의 시료채취 허가 - 악취방지 조치기간 연장 승인 -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 악취방지시설의 자진 개선계획서 제출 - 악취배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 -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악취배출시설 개선명령 - 악취배출시설 과징금 처분 -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등에 따른 청문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11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없음
12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없음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분석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의 단위사무 474개를 분류한 결과,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107개,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관련 단위사무 103개, 공유림관리 관련 단위사무 68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관련 단위사무 49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단위사무는 81개로 나타남

<표 3-31>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1	농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0
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107
3	농업자재의 관리	21
4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0
5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3
6	공유림관리	68
7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3
8	가축전염병 예방	26
9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49
10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03
11	중소기업의 육성	11
12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
13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1
99	기타 단위사무	81
합계		474

1) 농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단위사무

- 농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단위사무는 없음

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단위사무

-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에 해당되는 107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36개, 시·군·구 이양사무 62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5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4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농수산물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표 3-3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위촉	추가	
- 농산물 중 누에씨, 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추가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 관계장부 및 서류 열람	추가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조사	추가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 농산물안정성 조사	추가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 시료수거	추가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산지 지정 변경 해제	1)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주산지의 지정	1)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농업·농촌기본법)		
- 가족농의 생산성향상 및 경영안전시책 수립시행	1)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 농업경영체 자금지원	1)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 및 점검	추가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 수산물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위촉	조항삭제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축산법)		
- 수정사의 교육 실시	1)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염관리법)		
-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	
- 청문	1)	
-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	
(종자산업법)		
- 우량종자(보급종)의 생산·공급업무	1)	
(수산업법)		
- 월동구역, 월하구역 지정, 고시	1)	
- 육성수면의 지정	1)	
- 육성수면의 지정 신청	1)	
(임업 및 산촌진흥지역에 관한 법률)		
-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1)	
- 산림의 이용·지원	1)	
-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1)	
-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1)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1)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1)	
-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1)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1)	
- 청문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의 개설 구역으로의 편입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축산물 검사결과 개선지도	1)	
(농어촌정비법)		
- 교환·분합의 인가	1)	
- 환지계획의 변경인가	1)	
- 환지계획의 인가	1)	
-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 및 통지	1)	
- 농어촌 용수구역의 고시	2)	
36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33>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농약관리법)		
- 농약관매업 등록 및 등록증 교부(재교부)	1)	
- 등록의 취소	1)	
- 등록취소시 청문	1)	
- 영업의 정지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 수리계 경비부과 승인	조항삭제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 수리계 경비부과 이의조정 재결	조항삭제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 수리계 변경규약 제출	조항삭제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 수리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조항삭제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조항삭제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 수리계의 등록	조항삭제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수리계의 지도감독	조항삭제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수리계의 해산신고	조항삭제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수산물품질관리법)		
- 청문	1)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조항삭제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	조항삭제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 수산물 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조항삭제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	1)	
-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양식 제한금지 내용 고시 등	1)	
-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과 그 고시	1)	
- 어장관리 해역의 지정, 변경해제외 고시	3)	
- 어장면적의 조정 등	3)	
- 어장의 관리면허 등 동시갱신	3)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어장의 정화, 정비실시 계획 수립변경과 그 고시	3)	
- 어장정화, 정비실시, 비용의 부담 및 징수 등	3)	
(기르는어업육성법)		
-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보고 및 업무감독	1)	
-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명령	1)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및 변경신고	1)	
- 수산질병관리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1)	
- 수산질병관리원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대한 관할법원 사실통보	1)	
- 수산질병관리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 업무의 정지명령	1)	
- 휴업·폐업의 신고	1)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2)	
(수산업법)		
-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1)	
(양곡관리법)		
- 과태료 부과징수	1)	
-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1)	
- 양곡가공업의 등록신고	1)	
- 양곡가공업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1)	
(어선법)		
- 어선건고·개조(발주) 허가 및 변경허가	3)	
- 청문	3)	
-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재교부	3)	
- 허가제한	3)	
- 허가조건 철폐	3)	
- 허가취소, 공사중지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지명령	3)	
(어장관리법)		
- 어장정화·정비의 대행	3)	
(수산업법)		
-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	3)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내수면어업법)		
- 유어행위의 규제	3)	
(축산물가공처리법)		
- 과징금의 처분	8)	
- 과태료의 부과·징수	8)	
- 생산실적 등의 보고	8)	
- 시설개수명령	8)	
- 영업자의 지위승계자 신고	8)	
- 조건부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8)	
- 청문	8)	
- 축산물 운반·판매업의 신고	8)	
- 축산물보관업의 변경허가	8)	
-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8)	
- 폐쇄조치 등	8)	
- 허가시 부관첨부	8)	
-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8)	
- 휴업·재개업(또는 폐업) 및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8)	
- 휴업·재개업(또는 폐업) 및 신고내용 변경 신고	8)	
62개 사무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34>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사업의 지원	1)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 안전성조사 (광역)	1)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1)	- 시료수거 조사(광역)	1)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1)	- 안전성결과조치 (광역)	1)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어촌정비법) -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3)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4)	(농약관리법) - 유통농약 등의 검사 및 시료 수거명령	5)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		5개 사무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3) 농업자재의 관리 단위사무

- 농업자재의 관리 사무에 해당되는 2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3개, 시·군·구 이양사무 1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7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신기술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표 3-35> 농업자재의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비료관리법) - 불량비료 판매중지, 회수, 폐기 등의 관련 조치	1)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 신기술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 촉진정책 강구	추가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관련 조치 요청	추가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3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36> 농업자재의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1)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1개 사무		

4)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단위사무

- 해당 단위사무 없음

5)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단위사무

-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사무에 해당되는 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2개, 시·군·구 이양사무 1개로 나타남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37>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1)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 인증취소, 청문	1)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2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38>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유통산업 발전법) - 등록의 취소 등	3)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1개 사무		

6) 공유림관리 단위사무

- 공유림관리 사무에 해당되는 68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47개, 시·군·구 이양사무 11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0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산지 관리 및 복구 지원

<표 3-39> 공유림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산지관리법)		
- “상동” 범위의 산지전용허가	추가	
-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추가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추가	
-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추가	
- 용도변경의 승인	추가	1) 지역산림계획 작성
(산림기본법)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 산촌진흥지역 지정	1)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산지관리법)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 복구비등의 예치	추가	5) 특수조립지 관리
- 복구비의 반환 등	추가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 복구 설계선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추가	
- 복구의 대집행 등	추가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추가	
- 복구준공검사 등	추가	
-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추가	
-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면제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서 제출	추가	
-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추가	
- 채석단지 지정·해제 고시	추가	
-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추가	
- 채석단지의 지정	추가	
- 채석단지의 해제	추가	
- 채석신고의 취소	추가	
- 재해방지 및 복구조치 명령 등	추가	
- 청문	추가	
- 광구안에서의 광물함유 광석 채석허가	추가	
- 재해방지 및 복구 조치 명령 등	추가	
-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서 제출	추가	
- 채석기간 허가	추가	
- 채석기간의 연장허가	추가	
- 채석허가 기준	추가	
- 채석허가 및 변경허가	추가	
- 채석허가의 취소	추가	
- 청문	추가	
- 재해방지 및 복구 조치 명령 등	추가	
- 청문	추가	
- 토사채취기간 허가	추가	
-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추가	
- 토사채취신고 및 변경신고	추가	
- 토사채취허가 기준	추가	
- 토사채취허가 및 변경허가	추가	
-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추가	
-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추가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추가	
-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채종림 또는 수형목 지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5)	
- 특수산림사업 지구의 지정 등	5)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등	5)	
47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산지 관리 및 복구 지원

<표 3-40> 공유림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산지관리법) -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 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추가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 산지전용신고 등	추가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施業)신고 수리
- 산지전용허가	추가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추가	4) 산불예방, 도·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추가	5) 산림병충해 방제
- 용도변경의 승인	추가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 포상금의 지급	추가	7) 임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 및 신고 수리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추가	9) 입산허가
-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추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채종림안에서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신고수리	1)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
11개 사무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41> 공유림관리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 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 청원경비 미납시 배치 보류·중지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 폐지 및 감원 신청 처리결정 및 통보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 폐지(불필요시) -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의 수납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감원신청 접수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청원 권장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통지서 발부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권면직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징계처분	4) 4) 4) 4) 4) 4) 4) 4) 4) 4) 4)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施業)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
-		10개 사무		

7)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사무에 해당되는 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개, 시·군·구 이양사무 2개로 나타남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42>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과태료의 부과 권한	2)	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4) 종축장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증식·보호
1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43>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축산법) -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4)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추진
(초지법) -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 경우	2)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2개 사무		

8) 가축전염병 예방 단위사무

-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에 해당되는 26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5개, 시·군·구 이양사무 8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4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9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44>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보고 지시 및 감독	1)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 조치 등
- 가축방역 상황조사 결과 보고 접수	1)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 가축방역조치의 권고	1)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1)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 무관세대상 가축의 확인	해당조항 없음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45>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소독실시 확인	1)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 가축사육 제한	1)	
- 가축사육시설 폐쇄	1)	
- 가축의 격리와 이동 제한 등	1)	
- 가축의 사체 등 발굴 허가	1)	
- 도태의 권고	1)	
- 살처분 및 축건의 억류 명령	1)	
- 축사 등의 소독명령	1)	
8개 사무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46>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1)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 방역관 및 동물 검역관 배치	3)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1)		3)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가축전염성 질병 방역 조치관련 의견수렴	2)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1)		2)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1)	- 가축전염성 질병예찰 실시	2)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		4개 사무		

9)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단위사무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에 해당되는 49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6개, 시·군·구 이양사무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2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5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관광지 관리 및 관광휴양사업 지원(관광진흥법 등)

<표 3-47>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승계 신고 수리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청장과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	1)	
-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과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1)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관광진흥법) - 관광지 등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추가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 관광지의 지정	추가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 관광지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변경의 고시	추가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 관광특구의 지정	추가	
-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면적변경시 고시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 관광협회설립인가 -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接客 업무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p>(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홍보, 조사, 연구 전문기관 지정 <p>(농어촌정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휴양자원개발 및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의 지원육성 <p>(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업의 육성 <p>(개별소비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p>추가</p> <p>추가</p> <p>추가</p> <p>1)</p> <p>추가</p> <p>1)</p> <p>1)</p>	
16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표 3-48>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료제출,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	1)	
- 시군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사항과 농공단지 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의 부과, 징수	1)	
(관광진흥법)		
- 과징금의 부과	추가	
- 국내·외 여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추가	
- 등록취소 등	추가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지위승계신고	추가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 지 및 보급
- 폐쇄조치 등	추가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 금수요 파악 및 지원
(산업디자인 진흥법)		
- 디자인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의 개선방안 수립	1)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1)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 산업디자인 통계의 조사	1)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 산업디자인의 보호	1)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도, 감독 (광역)	추가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도, 감독 (국가)	추가	
(수산자원 관리법)		
- 어업자 협약운영위원회 설립	1)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	
- 해상종묘 생산 어업허가	1)	
16개 사무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표 3-49>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추가 추가	(관광진흥법) - 입장료 등의 징수대상 범위 및 금액결정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추가 추가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2개 사무		

10)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사무에 해당되는 10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52개, 시·군·구 이양사무 41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9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개 제외
- 시·도 및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50>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수거·조사등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 안전성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1)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1)	
(주택법)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1)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조항없음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 설립인가 취소사실 공고	관련조항없음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 조합에 대한 업무감독 등	관련조항없음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관련조항없음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 조합의 설립인가(사업구역이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제외)	1)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 청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과태료 부과 징수	1)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 수거 명령 등	1)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1)	
- 보고·검사 또는 질문	1)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	1)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	1)	
-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포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1)	
- 과태료의 부과, 징수	1)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1)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	1)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접수 및 등록 말소	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의 재발급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과징금의 부과·징수	1)	
-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	
-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1)	
-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	
- 유독물영업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1)	
-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1)	
-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	
-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1)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	
-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1)	
- 청문의 실시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1)	
(화장품법)		
- 개수명령	1)	
- 검사명령	1)	
- 과징금의 부과·징수	1)	
- 과태료의 부과·징수	1)	
-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1)	
- 신고필증의 재교부	1)	
- 제조업 신고 등	1)	
- 청문	1)	
- 폐기명령 및 처분	1)	
- 폐업 등의 신고	1)	
- 행정처분	1)	
50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51>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 과태료부과 및 징수	1)	
- 시정 명령	1)	
- 영업 취소 및 정지	1)	
-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의 행정처분	1)	
- 결혼중개업자관련 보고 및 검사	1)	
-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1)	
- 결혼중개업자의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접수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1)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방문판매업자의 영업의 정지	1)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 방문판매업자의 휴·폐업 재개의 신고	1)	3) 물가지도 단속
(복권 및 복권기금법)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 과태료의 부과, 징수	1)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출입, 조사	1)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유선 및 도선사업법)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 과태료 부과, 징수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 기준적용의 예외인정	1)	
- 대선료 등의 게시장소 지정	1)	
- 도선사업자의 운임신고 수리	1)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결정	1)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안전검사	1)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	1)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의 승선정원결정		
- 선박의 선령기준 연장	1)	
- 소형 유도선의 지정	1)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제한명령	1)	
- 영업구역의 지정	1)	
- 운항약관의 신고 수리	1)	
- 유선사업자의 승선, 대선료 신고 수리	1)	
- 유선에 비치하여야할 인명구조장비의 예외인정	1)	
-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인정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 검사 및 교육업무의 권한 위탁	1)	
- 관계기관에의 통보	1)	
- 도선의 요금 인하 요구	1)	
- 면허취소 등에 대한 청문	1)	
-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변경	1)	
-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	
- 승선신고서 관리	1)	
- 승선신고서 제출 예외 인정	1)	
- 유·도선장에 대한 검사 등	1)	
- 출·입항 기록·관리대상 선박 지정	1)	
- 휴·폐업 등의 신고	1)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 과태료의 부과징수	1)	
- 이의제기시 관할법원 통보	1)	
41개 사무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52>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양곡관리법) - 과태료 부과징수	1)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과징금 부과·징수	1)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1)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의뢰	1)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1)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1)	- 위반행위의 조사	1)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 확인	1)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1)	- 통신판매업자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1)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1)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수리	1)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 폐지, 재개의 신고의 수리	1)	
-		9개 사무		

11) 중소기업의 육성 단위사무

-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에 해당되는 1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5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5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53>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식품위생법) - 동업자 조합의 설립 인가	1)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1)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 정관변경의 인가	1)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 지방조합, 사업조합 또는 지역연합회의 설립인가	1)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 청문	1)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54>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해당법령 없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해당법령 없음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 복합단지사업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시·도 사무(예시)	판단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로 조성된 토지시설의 무상사용 협약체결		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		1개 사무		

12)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단위사무

-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사무에 해당되는 1개의 단위사무는 시·도 이양사무로 나타남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55>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전통외식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	4)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개 사무		

13)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단위사무

-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사무에 해당되는 1개의 단위사무는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로 나타남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56>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 계획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1)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 계획수립·시행 2)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 3) 토산품 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		1개 사무		

14)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에 해당되는 8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45개, 시·군·구 이양사무 32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4개로 나타남

<표 3-57>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 낚시 어선업 지도	- 과태료의 부과	- 농업기반시설폐지승인
-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 규약의 시정명령	-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위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대규모 점포 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	- 시정명령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노동조합 설립 신고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 노동조합 해산 신고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 보고자료 제출요구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단체협약의 신고	
- 복합운송주선업의 승계신고의 수리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등록	- 변경사항의 신고 등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신고증의 교부 등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휴지폐지 신고의 수리	-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 청문	- 쟁의행위의 신고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 제공자 지원	-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등	
-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직장폐쇄의 신고	
- 일반화물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 폭력행위 등의 신고	
- 목재비축림의 고시	- 해산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 과징금 부과	
-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백화점, 쇼핑센터 제외)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 징수(산림용종자 제외) - 종자유통조사 등(산림용종자 제외) - 기능경기대회 개최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 지급 - 입상자에 대한 상금지원 - 과태료 부과 -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등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재단 여유금의 운용방법 승인 - 재단의 업무감독권 - 재단의 여유금의 운용방법의 승인 - 방지사설업의 등록 - 방지사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시공감리자의 지정 -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등록취소시 청문 -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등 - 측정대행업의 등록 -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청문 - 환경건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 환경건설팅회사의 등록 - 환경건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 등의 확인요청 - 영농조합법인 해산청구 - 입목등록원부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 발급 - 입목의 등록 - 등록 - 등록취소 - 청문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보고·감사 등 - 특정어구 사용금지 및 예외적 사용승인 	
45개 사무	32개 사무	4개 사무

* 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사무폐지 등 그 밖의 기타사무 없음

<표 3-58>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정리

코드 구분 (중분류)		사무 예시
1	농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의 개설 등 -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사후관리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3	농업자재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처분 - 과징금 체납처분 - 과태료 부과·징수 -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 비료생산업의 등록 - 비료생산업의 등록 변경 및 폐업 신고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납부 - 청문 - 과징금 처분 - 과징금 체납처분 -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 비료수입업의 신고 -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 -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 - 청문 - 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4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5	농의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6	공유림관리	-
7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8	가축전염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의 공동실시 명령 -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 명령 - 검사증명서의 휴대명령 - 사실증명서 교부 -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명령 - 주사표시명령 - 기구, 장비의 구비 및 시설개선의 지도명령 - 기구, 장비의 대국민 지원지도와 동원명령 - 위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도명령

코드 구분 (중분류)		사무 예시
9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이용 시설업·국제 회의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관광숙박업 시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 회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 위원회 설치 -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또는 신고 - 변상금의 징수 -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 여항시설의 사용(또는 점용) 신고 - 여항시설의 사용(또는 점용) 허가 - 여항시설의 사용(또는 점용) 허가 협의 - 여항시설의 사용허가 부관참부 - 여항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점용의 정지 - 원상회복 등 - 청문 -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10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11	중소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 -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의견청취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12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3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99	기타 단위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분석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단위사무 738개를 분류한 결과, 자연보호 활동 관련 단위사무 145개,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관련 단위사무 111개,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단위사무 51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단위사무는 256개로 나타남

<표 3-59>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1	지역개발사업	7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111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1
4	지방도·시·군·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7
5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46
6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0
7	자연보호 활동	145
8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4
9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26
10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13
11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51
12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12
13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14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0
15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11
99	기타 단위사무	256
합계		738

1) 지역개발사업 단위사무

- 지역개발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7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7개 단위사무 모두 기타 이양유형으로 분류되어 사무 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음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단위사무

- 지방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11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85개, 시·군·구 이양사무 22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2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2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건설기계의 관리(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 등)
 - 건설기술업(자)의 관리(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
 - 일반건설업(자)의 관리(과태료 등)
 - 건축사의 관리(과태료 등)
 - 전기공사업(자)의 관리(공사업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등)
 - 전력기술업(자)의 관리(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관할법원에서의 통보 등)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관리(과태료의 부과 등)
 -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등)

<표 3-60>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	추가	
-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추가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추가	
- 정기검사의 최고	추가	
(건설기술관리법)		
-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추가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추가	
-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추가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추가	
- 청문	추가	
- 휴·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 과태료	추가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일반건설업 등록	추가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등	추가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건설업 등록증의 교부	추가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건설업 변경신고	추가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 일반건설업 시정명령	추가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 일반건설업 실태조사	추가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추가	
- 일반건설업의 양도 등	추가	
- 청문	추가	
(건축사법)		
- 건축사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추가	
-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보고·검사	추가	
-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 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 상실처분에 따른 청문	추가	
-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추가	
- 건축사업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추가	
- 건축사업무의 신고	추가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전기공사업법)		
- 공사업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추가	
- 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추가	
- 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추가	
-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추가	
- 공사업의 폐업신고수리	추가	
-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추가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추가	
-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에 대한 조치	추가	
- 전기공사업의 등록	추가	
(전력기술관리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관할법원예의 통보	추가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추가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접수	추가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추가	
- 전력시설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수리	추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업무	추가	
(정보통신공사업법)		
- 과태료의 부과, 징수	추가	
- 영업정지 및 등록의 취소	추가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추가	
-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신고 등	추가	
- 청문	추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추가	
-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감리업무 지정제한 등	추가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추가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추가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	추가	
- 공업화 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추가	
-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추가	
-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추가	
-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 승인	추가	
- 수사의뢰, 통보의 접수	추가	
-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추가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 청문	추가	
(주택법시행규칙)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고접수, 승인(변경승인)서 교부	추가	
(택지개발촉진법)		
-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6)	
- 준공검사	6)	
-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	6)	
- 택지개발 예정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20만 제곱미터이상 포함)	6)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6)	
-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6)	
- 선수금 및 토지상환 채권 발행의 승인	6)	
-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6)	
-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고시	6)	
- 예정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6)	
- 예정지구의 지정, 변경지정 또는 해제	6)	
- 준공검사(시행자가 법 제7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6)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통지	6)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6)	
- 택지의 공급 승인	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고시	6)	
85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건설기계의 관리(건설기계매매업자의 제시·매도·신고 접수 등)
- 건설기술업(자)의 관리(건설공사장 등 안전점검 검사)
- 건설업(자)의 관리(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지시 등)
- 전기사업(자)의 관리(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 등 출입허가 등)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관리(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과징금의 부과 등)

<표 3-61>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제시·매도·신고 접수	추가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추가	
-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접수	추가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청 접수 및 발급	추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추가	
- 건설기계조종사의 변경 신고 접수	추가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공사장 등 안전점검 검사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지시	추가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결격 사유통지	추가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 등	추가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추가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건설업의 양도 등 신고의 접수	추가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 건설업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에따른 조치	추가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추가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청문	추가	9) 무허가건축물 단속
-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추가	
- 전문건설업의 등록	추가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 등 출입허가	추가	
- 출입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에게 사실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부여	추가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추가	
(주택법)		
- 과징금의 부과	추가	
22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건설기계의 관리(건설기계매매업자의 제시·매도·신고 접수 등)

<표 3-6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추가 추가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취소 시 등의 청문 - 건설기계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추가 추가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		2개 사무		-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단위사무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4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4개, 시·군·구 이양사무 4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23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승인
 -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등)
 - 주거환경개선의 계획수립·시행·지원(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고시, 통지 등)

<표 3-6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추가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기본계획 승인	추가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의결	추가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추가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추가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록	추가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 연장승인	추가	7)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추가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추가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고시, 통지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효력상실 고시	추가	
- 주택공급기준일의 승인	추가	
- 주택공급조건 등의 승인	추가	
(도시 재개발법)		
-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추가	
14개 사무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부동산 감정평가자 지정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정정 등
-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고시

<표 3-6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자의 지정	추가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시 확인 요청사무	추가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시 통보	추가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추가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4개 사무		

4) 지방도·시·군·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단위사무

- 지방도·시·군·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7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5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교통안전진단 및 지도(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
 - 농어촌도로정비의 변경승인 및 (변경)보고

<표 3-65>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교통안전법)		
- 개선명령	추가	1) 도로관리계획 수립
- 과태료의 부과, 징수	추가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농어촌도로정비법)		
- 도로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	추가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 도로사업계획의 보고	추가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 도로정비계획수립 보고	추가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료원 관리
5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도로통행료 징수대행 승인권한

<표 3-66>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판단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판단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추가	(유료도로법) - 비도로관청이 통행료의 징수 등을 대행할 경우 그 승인 권한	추가	1) 시·군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시·군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		1개 사무		-

5)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단위사무

-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46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0개, 시·군·구 이양사무 31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4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실내공기질의 관리(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소음진동의 관리(환경관리인의 교육실시 및 교육경비 징수)
 - 주택관리사의 관리(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등)

<표 3-67>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추가	
- 지하시설 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추가	
- 지하시설 관리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추가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유지 권고	추가	
(소음진동규제법)		
- 환경관리인의 교육실시 및 교육경비 징수	추가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주택법)		
-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추가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추가	
-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추가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의 교부	추가	
-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	추가	
10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한계농지의 조사, 정비지구 지정 등
- 소음진동의 관리(개선명령 등)
- 생활악취의 관리(생활악취 제거조치 이행 또는 개선명령)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불박이장의 설치권장)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신고·접수·허가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택관리업의 등록, 등록관련 보고·검사, 등록말소 등)

<표 3-68>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농어촌정비법)		
-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추가	
- 한계농지의 조사승인 및 고시	추가	
(소음진동규제법)		
- 개선명령	추가	
- 방지시설 설치면제 인정	추가	
-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추가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추가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추가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추가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 보고 및 검사 등	추가	5) 생활개선사업 추진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추가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	추가	7) 광고물 정비·단속
- 조업정지 명령 등	추가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 조치명령	추가	
- 청문	추가	
- 허가취소 등	추가	
- 과태료	추가	
-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등의 명령	추가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보고 및 검사 등	추가	
- 생활소음·진동 규제	추가	
- 작업시간의 조정 등 조치명령	추가	
- 청문	추가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추가	
-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조치 요청	추가	
(악취방지법)		
- 생활악취 제거조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불법이장의 설치권장	추가	
(주택법)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신고접수	추가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허가	추가	
- 보고·검사 등(주택관리업 등록관련)	추가	
- 주택관리업의 등록	추가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추가	
- 청문	추가	
31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소음진동의 관리(과태료)

<표 3-69>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추가	(소음진동규제법) - 과태료	추가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 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		1개 사무		-

6)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단위사무

○ 해당 단위사무 없음

7) 자연보호 활동 단위사무

○ 자연보호 활동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145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98개, 시·군·구 이양사무 31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0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6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현행 시·도 사무예시와의 비교·분석결과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70> 자연보호 활동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대기환경 보전법)		
- 환경관리인의 교육실시 및 교육경비 징수	1)	
- 개선명령	1)	
- 과징금의 부과·징수	1)	
- 기간연장의 승인	1)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1)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	4) 도시자연공원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1)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	6) 자연보호계획 수립
- 조업정지명령	1)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 조치명령	1)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
- 조치명령	1)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 측정기기의 부착 등 조치명령	1)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1)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수리	1)	
- 비산먼지발생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중지, 사용제한	1)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	1)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 검사업무의 대행	1)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증지	1)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1)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과태료 부과, 징수	2)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 원상회복명령 등	2)	
- 자료제출요구	2)	
- 정밀조사	2)	
- 제한된 행위를 한 경우 행위의 내용과 결과 신고 또는 통보에 대한 접수	2)	
- 출입제한 또는 금지해제	2)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수립	2)	
- 특정도서안에서의 행위허가	2)	
- 특정도서의 지정, 해제, 변경	2)	
- 허가취소 또는 행위정지 및 변경명령	2)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계획의 접수·검토, 사방지의 지정·고시, 협의 및 조건의 부과	3)	
- 사방지의 지정, 협의 및 지정고시	3)	
-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	3)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산지관리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3)	
-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수산업법)		
- 보호수면의 지정	2)	
- 보호수면의 지정합의	2)	
-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2)	
- 보호수면의 해제공고	2)	
(수산자원보호령)		
- 허가신청서 제출	2)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적용제의	2)	
(수질환경보전법)		
-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 보전구역 지정, 고시	1)	
- 지정호소 수질보전계획 승인	1)	
- 조류발생 등 피해예방조치 명령	1)	
- 환경관리인의 교육 실시 및 교육경비 징수	1)	
(습지보전법)		
-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2)	
- 보고 및 조사 등	2)	
- 손실보상	2)	
-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2)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2)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승인	2)	
-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 시행	2)	
-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2)	
-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의 고시	2)	
-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2)	
- 습지에 대한 조사	2)	
- 중지명령, 원상복구명령 등	2)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해제 사실 고시	2)	
- 출입제한 금지시 해당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2)	
- 출입제한 등	2)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	
- 포상금 지급	2)	
(야생동식물 보호법)		
-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의 체결 등	5)	
- 중지명령	5)	
- 출입제한	5)	
- 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5)	
- 등록의 취소	5)	
- 보고 및 검사 등	5)	
-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5)	
- 시도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승인	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1)	
- 과징금의 부과·징수	1)	
- 과태료의 부과·징수	1)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	
-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	
-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	
-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1)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1)	
- 조치명령	1)	
-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1)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2)	
-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2)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2)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연기	1)	
-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1)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 등	1)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1)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3)	
-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등	3)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변경 등	3)	
98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등)

<표 3-71> 자연보호 활동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발생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사무	1)	
- 개선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의 사무	1)	
- 비산먼지발생사업 시행자의 신고수리사무 등	1)	
(사방사업법)		
-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 제한	3)	
-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 허가	3)	
(산지관리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3)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3)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 과태료의 부과·징수	3)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 복구비의 반환	3)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 복구비의 예치 등	3)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3)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복구준공검사	3)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3)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	10) 자연보호 지도·계몽
-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	3)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3)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3)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소음진동규제법) - 자동차 경음기 사용규제 등 운행규제	2)	
(수산업법) -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와 어로제한의 금지	2)	
- 보호수면의 관리	2)	
- 소하성어류 인공방류 신고	2)	
(야생동식물보호법) - 수렵장의 설정 및 고시	5)	
- 천연기념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신청	5)	
- 수렵면허장 교부, 면허의 취소·정지	5)	
- 조수보호구 설정 및 해제	5)	
- 수입, 반입 조수의 양도, 폐사시 신고접수	5)	
- 수입, 반입 조수의 용도변경 승인	5)	
-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가공품 수출입 또는 반입허가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등	추가	
31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현행 시·도 및 시·군·구 사무 예시와의 비교·분석결과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72> 자연보호 활동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야생동식물보호법) - 조수보호원의 임명·해임 및 명예조수보호원의 위·해촉 - 수립면허장 소지 및 조사포획 등 검사 (골재채취) -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 골재채취허가 -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 청문 -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5)		5)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5)		5)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5)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3)		3)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3)		3)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3)		3)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	3)		3)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3)		3)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3)		3)	10) 자연보호 지도·계몽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3)		3)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3)		3)	-
-	-	10개 사무	-	-

8)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단위사무

-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4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4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공유수면매립 협의승인
 - 소하천정비의 시행계획승인·종합계획제출·중기계획의 수립보고

<표 3-73>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공유수면매립법)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	추가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승인	추가	2) 하천예정지의 지정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출	추가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의 수립보고	추가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감시(자갈채취단속 등)
4개 사무		-

9)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단위사무

-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26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21개, 시·군·구 이양사무 2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2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1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에서 추가 필요
 - 먹는물의 관리(품질검사기관의 위탁 등)
 - 수도사업(자)의 관리(관할구역의 급수에 대한 협의 등)

<표 3-74>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먹는물 관리법)		
- 품질검사기관의 위탁	추가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추가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청문	추가	3) 상수도공채 발행
-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추가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수도법)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할구역의 급수에 대한 협의	추가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추가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 수도시설 등의 매수 승인	추가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협의	추가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 “상동”범위의 일반수도사업 폐업, 휴업 허가	추가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개선명령 등	추가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급조건의 변경	추가	
- 법령위반자에 대한 조치	추가	
- 영리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기구 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의 공급 중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시설(특광역시장) 및 1일 1만톤 이하인 시설(도지사)의 일반수도 사업 인가 -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권한 - 시설용량이 1일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 폐업·휴업의 허가과 그 공업용 수도사업 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하수도법)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중지명령 등 -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제외)의 개선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권한	추가 추가 추가 추가 11) 11) 11) 10)	
21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수도사업(자)의 관리(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표 3-75>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수도법)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 중수도 설치, 운영 이행명령	추가 7)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2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공공하수도의 관리(과태료, 보고·검사 등)

<표 3-76>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	(하수도법) - 과태료	추가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추가	- 보고·검사	추가	
-		2개 사무		-

10)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단위사무

-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13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0개, 시·군·구 이양사무 3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에서 추가 필요
 - 먹는물의 관리(검사기관 지정 등)

<표 3-77>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먹는 물 관리법)		
- 검사기관 지정	추가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조정 2)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 검사기관 지정취소	추가	
- 검사기관 평가	추가	
- 샘플개발 허가	추가	
- 샘플개발 허가 취소	추가	
- 샘플개발 허가 및 변경허가	추가	
- 샘플개발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가	
- 샘플개발 허가의 제한	추가	
- 샘플개발 허가의 조건부여	추가	
- 청문	추가	
10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현행 시·군·구 사무 예시와의 비교·분석결과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78>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수도법)		
- 간이상수도 인가 및 변경인가	2)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시행
- 간이상수도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2)	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
- 간이상수도 준공시 수질검사	4)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
3개 사무		-

11)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단위사무

○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사무

에 해당되는 5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36개, 시·군·구 이양사무 9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6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일반여행업(자)의 관리(일반여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 유원시설업(자)의 관리(등록취소, 폐쇄조치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묘목의 조사 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등)
- 산지의 관리(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고시·해제 등)
- 수목원조성 및 진흥(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 인증, 수목원조성 계획 승인, 변경승인 등)

<표 3-79>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도 사무(예시)
(관광진흥법)		
- 일반여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추가	
- 등록취소 등	추가	
- 폐쇄조치 등	추가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추가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추가	
-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추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추가	
-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추가	
- 행정처분	추가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추가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추가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 수목 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추가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산지관리법)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추가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고시	추가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해제	추가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추가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추가	7) 관광휴양지의 관리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 인증 등	추가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인증의 취소 등	추가	9)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등록의 취소	추가	10)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등록(국립제외)	추가	
- 등록의 말소	추가	

시·도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도 사무(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의 교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승인 협의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취소 전 청문실시 -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 -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 수목원조성승인, 취소시 협의기관 및 관계 인통보, 고시 - 승인 취소시 원상회복 명령 -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 수목원조성 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협의, 승인의 취소, 원상회복의 명령, 통보 및 고시에 관한 권한 -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에 관한 권한 - 청문에 관한 권한 <p>(자연공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공원의 지정승인 -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2) 2) 	
36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일반여행업(자)의 관리(일반여행업 등록 및 변경)
- 유원시설업(자)의 관리(등록취소, 폐쇄조치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인 지정)
- 산지의 관리(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산지전용신고 등)

〈표 3-80〉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관광진흥법) - 일반여행업의 등록 및 변경	추가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인 지정	추가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산지관리법)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추가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 과태료 처분대상	추가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 과태료 처분에 따른 법원예의 통보	추가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추가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산지전용신고	추가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산지전용신고 수리	추가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자연공원법) - 군립공원의 지정 승인	2)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12) 관광휴양지의 관리
		13)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9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산림의 보호(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타당성 평가 등)
- 산불예방 및 진화 관리(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위촉)
- 자연공원의 관리(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

<표 3-81>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독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추가	(산림보호법)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추가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독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독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추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타당성 평가	추가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독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독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추가	- 설계의 권한	추가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추가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휴양지의 관리	추가	- 산림병해충의 구제 예방에 대한 조치	추가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위촉	추가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9)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	추가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		6개 사무		-

12) 지방계도사업의 경영 단위사무

○ 해당 단위사무 없음

⇒ 지방계도사업의 경영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12개 단위사무의 경우 모두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로 현행 시·도 및 시·군·구 사무 예시와 검토될 필요성이 없음

13)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단위사무

○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8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개, 시·군·구 이양사무 7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표 3-82>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추가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 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1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주차장의 관리(검사필증의 교부 등)

<표 3-83>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주차장법) - 검사필증의 교부 등 -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과태료의 부과·징수 -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 등 - 안전도 인정서의 교부 - 안전도 인정의 취소 - 청문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
7개 사무		-

14)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단위사무

- 해당 단위사무 없음

15)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단위사무

-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1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8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3개 제외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온천의 관리(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해제보고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표 3-84>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도 사무(예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 준공검사 - 외국인전용약국 등록 (온천법) - 온천검사실적 및 검사내용 보고 명령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해제보고 - 온천발견신고 및 신고수리사항보고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 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8개 사무		-

16) 기타 단위사무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로 분류된 256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도 이양사무 122개, 시·군·구 이양사무 130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4개 제외

○ 분석결과

- 사무 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개정 시 검토

<표 3-85>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 재산물의 무상귀속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면제 - 공익처분 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 과태료 부과·징수 - 국가 등이 협의·승인받은 공유수면매립의 공사시행기관준공인가 - 매립 실시계획변경인가 - 매립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고시 - 매립면허 - 매립면허 경합시의 면허 - 매립면허 고시 - 매립면허 또는 인가 등의 취소 - 매립면허 취소 등 - 매립면허 취소시 청문 - 매립면허 협의 및 의견청취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준공인가 -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	(공유수면관리법) - 건축물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 검토 - 건축물의 신·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 - 건축물의 협의 승인 - 공매처분 금액의 잔여금액 공탁 - 공유수면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 공유수면 장애물의 변경 제거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출금액의 징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의 징수 - 공유수면점용·사용료의 산정 시 토지가격의 변경반영 -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검토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협의 시 첨부 서류 송부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서제출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고시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변경허가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 매립면허의 제한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접수	
- 매립목적 변경의 인가	- 공유수면의 관리	
- 매립목적 변경인가 고시	-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	
- 매립목적 변경협의 및 심의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증 교부	
- 매립실시계획 인가	- 공유수면의 조사	
- 매립지 사용의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허가 취소 시 손실보상시행	
- 면허수수료 징수	- 공익을 위한 허가의 취소 및 공작물 이전 처분	
- 보고 및 검사	- 공작물 등의 귀속전 통지	
- 부관의 변경 또는 새로운 부관 첨부	- 과오납된 점용·사용료의 이자가산	
- 원상회복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보증금의 사용	- 과오납된 점용·사용료의 추가징수 및 반환	
- 원상회복 의무이행보증금 예치	-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 기회부여	
-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귀속통지 및 공고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접수의 통보	
- 이행보증금 반환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신고접수	
- 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보전 조치	- 관계서류의 제출	
- 정부사업 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매립지의 이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효력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 관할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신청접수	
(관광진흥법)	- 물건 등의 제거	
- 과징금 부과	- 방치 물건처분의 공매	
- 지위승계신고		
(교통안전법)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재개업, 폐업의 신고접수 및 등록	- 방치 물건처분의 공매 공고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의 말소 -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 자격의 취소 및 정지명령 - 청문의 실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의 취소 및 정지 - 부생연료유판매소의 과징금부과 - 부생연료유판매소의 과태료 부과 -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선박안전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및 취소 - 승강기보수업의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승강기보수업의폐지·휴지 및 재개의 수리 - 승강기보수업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 보험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명령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 검사 - 과태료 - 청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방치 선박등의 제거 - 변상금의 징수 - 분할납부 징수 - 손실보상 -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 실시계획 변경인가 - 실시계획 인가신청 접수 - 실시계획 인가증의 교부 -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증 교부 - 실시계획의 신고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검토결과 의 통보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신청 접수 -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 재결신청서의 신고접수 - 점용·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청 접수 - 점용·사용료 납입고지서 송부 - 점유토지 출입시 일시와 장소 통지 - 조사 실적의 기록관리 - 조사시 관리인의 동의 획득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의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관리위탁 신고 -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 면허취소 등의 처분 - 보고 등의 명령 및 검사 - 사업계획의 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상속신고 - 수송시설의확인과운송개시일연기, 기간연장신청 - 양도, 양수 신고 -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운임, 요금의 기준, 요율의 결정과 운임, 요금의 신고 -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 - 청문 - 합병신고 - 휴지, 폐지의 신고 - 개선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업무의 방해시 과태료 부과·징수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대한 의견 참고 - 허가취소의 청문 - 허위 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 협의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시 협의 및 승인 (관광진흥법) - 일반여행업의 과징금 및 과태료 - 일반여행업의 등록취소 등 - 일반여행업의 지위승계 신고 - 일반여행업의 폐쇄조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보완조치 명령 -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수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 및 사용정지처분요청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사용정지처분요청 - 해기사면허취소 및 선박사용정지처분요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과징금의 부과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등록의 취소 등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대여 약관(변경)신고 -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의 허가 - 자동차대여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 - 자동차대여사업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 자동차대여사업 휴지, 폐지신고 -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고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관리위탁 신고 - 면허취소 등의 처분 - 보고 등의 명령 및 검사 -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상속신고 - 수송시설의확인과운송개시일연기, 기간연장신청 - 양도, 양수 신고 -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운임, 요금의 기준, 요율의 결정과 운임, 요금의 신고 - 장의운송 사업의 등록 -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 - 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보고 및 검사 -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 조건부 등록 - 청문 - 과징금의 부과 - 과징금의 징수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 보고 및 검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 청문 (석탄산업법) - 석탄가공업의 등록 - 석탄가공업의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 석탄가공업의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 석탄가공업의 변경신고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 석탄가공업의 휴·폐업신고 등 -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위반자(어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신고 - 휴지, 폐지의 허가 - 개선명령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실시계획의 승인 - 허가 등의 의제 - 준공검사 <p>(전기통신 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징수 - 등록사항의 변경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 양도·양수 등 - 청문 - 휴지 및 폐지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 -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 -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감차조치명령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결정 -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의 결정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금지제한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구역 및 내용 고시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적용 - 전기공급등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금지 - 과태료 <p>(전기통신 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 옥외광고업 영업정지 - 옥외광고업의 신고 -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 허가취소 및 영업폐쇄 명령에 대한 청문 <p>(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보험사업자등이 행하는 통지의 접수 - 자동차 강제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p>(전기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의 전기공급 정지 요청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수리 - 운송사업의양도양수와법인합병 - 신고의 수리 - 운송약관의 신고 - 운수종사자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지정 - 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등록 - 청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시도단위협회 설립인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일반용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 (전기통신 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 과징금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징수 - 신고사항의 변경 - 양도·양수 등 - 청문 - 휴지 및 폐지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지하수법)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의 취소 등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양도·양수·합병·사업승계의 신고 -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122개 사무	130개 사무	0개 사무

※ 기타 이양유형 4개 제외

17)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정리

<표 3-86>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사무명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사무수
1	-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기초조사 실시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지방산업입지정책심의회 설치	7
2	-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승인관련 감리자 지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3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개발행위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 협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항 고시 및 보고 - 정비계획 수립시기 경과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위원회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23

사무명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사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지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재정지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의 시도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4	- 지방도·시·군·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원 지방도의 조사, 설계 	1
5	-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소음진동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 -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지정 - 방음, 방진시설 설치 등의 조치 요청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4
6	-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없음	0
7	- 자연보호 활동	(대기환경 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배출허용 기준 - 저공해자동차의운행등 - 운행차의 개선명령 - 운행차의 수시점검 	6
8	-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없음	0
9	-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 재처리 판매자에 대한 조치 등 	1
10	-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없음	0
11	-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없음	0
12	-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삭도·궤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지정 	12

사무명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사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의 부과·징수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명의변경신고 등 - 보고·검사 - 삭도·궤도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시설변경의 허가 - 안전검사 - 안전검사 업무의 위탁 - 준공검사 - 청문 -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 정지명령 	
13	-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없음	0
14	-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없음	0
15	-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온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변경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3
16	- 기타 단위사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선명령 (자동차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제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부과시 토지 가격의 변동분 반영결과 금액 부과 	4
합계			63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분석

<표 3-87>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28
2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7
3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6
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1
5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0
99	기타 단위사무	27
합계		119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단위사무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28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26개, 시·군·구 이양사무 2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교원 등의 연수관리(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 교원자격의 검정관리(교사자격증 박탈 등)
 - 단기산업교육기관의 관리(교육기관의 설치 신청 및 신청서류 인정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산업자문 등)
 -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관리
 - 자율학교의 지정 및 관리

- 학교급식의 관리(학교급식대상 선정 등)

<표 3-8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추가	
(교원자격검정령) - 교사자격증 박탈	추가	
- 교사자격증 재교부 및 정정	추가	
- 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인정	추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	추가	
(단기산업 교육기관 운영규칙) - 교육기관의 설치 신청 및 신청서류 인정	추가	
- 교육기관의 폐지, 학과 조정 등	추가	
- 교육기관의 학급당 정원 승인	추가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일수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자문	추가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산업교육기관의 특별과정 설치 운영	추가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허용	추가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 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 반영	추가	
- 실험 실습 시설의 확보	추가	
- 학교기업	추가	
-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허가	추가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	추가	
(초중등교육법) - 고등학교 보직교사 승인가준외의 보직 교사 승인	추가	
- 중학교 보직교사 승인가준외의 보직교사 승인	추가	
-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고시	2)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자율학교의 연장 운영	추가	
- 자율학교의 지정	추가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대상 선정	추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급식현황의 보고	추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 급식시범학교 및 급식연구학교의 지정, 운영	추가	
- 학교급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기준 결정	추가	
26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학교보건 관리(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통보 등)

<표 38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학교보건법)		
- 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통보	추가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 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방지조치	추가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2개 사무		-

2)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단위사무

-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47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29개, 시·군·구 이양사무 13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5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등록의 취소 등)
 - 지방문화원의 설치·운영(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등)

<표 3-90>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과학관육성법)		
- 과학관 등록증의 교부	6)	
- 과학관등록의 말소	6)	
- 과학관의 등록	6)	
- 등록과학관의 변경등록	6)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 등록의 취소	6)	2)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 청문	6)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 폐관통보 접수	6)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6)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 설립계획승인 등의 취소	6)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 설립계획승인 등의 협의	6)	
- 설립계획승인 등의 사실통보	6)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 청문	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부담 승인	6)	
- 연수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의 지정	6)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서류 제 출 요구	1)	
- 공립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등록의 취소	추가	
- 박물관·미술관 등록	추가	
-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교부	추가	
- 박물관·미술관 변경등록	추가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변 경승인	추가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추가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 인취소	추가	
- 시정요구 및 정관	추가	
- 청문	추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 지방문화원 사업실적 및 사업계 획 등 보고의 접수	추가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추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수립	6)	
-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6)	
29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유원시설업(자)의 관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 국민체육의 진흥(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

<표 3-91>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관광진흥법)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	추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법인 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1)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1)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1)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 사립 공공도서관의 폐관	1)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영화진흥법) - 영화상영의 제한	7)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영화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7)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자 징수
- 영화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7)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시설의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7)	
- 과태료의 부과·징수	7)	
-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7)	
- 청문	7)	
13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국민체육의 진흥(우수업체의 지정 등)

<표 3-92>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 우수업체의 지정	추가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 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운동장·체육 관·수영장 등)	추가		추가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운동장·체육관· 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 관의 설치·운영	추가	- 표창제도의 마련	추가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 리(도의 경우는 제외 한다)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우수업체의 지정신청 및 취소	추가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추가	- 우수업체의 지정취소 시 청문	추가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 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공교육·체 육·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및 지원				6)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		5개 사무		-

3)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단위사무

-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6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6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에서 추가 필요
 -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의 관리(문화재수리기능자 내지 수리업자의 등록 등)

<표 3-93>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등록	추가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등록 취소 등	추가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등록	추가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등	추가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추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추가	
6개 사무		-

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단위사무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1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10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1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표 3-9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도 사무(예시)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 제작자 지원	5)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 우수공예문화상품·우수전통식품 지정	5)	
-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접수	5)	
- 문화상품 품질인증 장려 및 지원	5)	
-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5)	
-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5)	
-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 문화산업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5)	
- 문화상품 공동물류센터의 설립 지원	5)	
- 문화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5)	
- 문화상품의 우선구매 권유	5)	
11개 사무		-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가 시·군·구 사무예시에 추가 필요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표 3-9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추가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		1개 사무		-

5)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단위사무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단위사무는 없음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도 없음

6) 기타 단위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로 분류된 27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도 이양사무 16개, 시·군·구 이양사무 11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분석결과

- 사무 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개정 시 검토

<표 3-96>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납본 - 납본대상 정기간행물의 고시 - 납본필증의 교부 - 등록번호의 표시 - 등록증 교부 - 등록취소 심판청구 - 발행정지명령 - 외국인등의 재산출자 -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직권등록 취소 - 청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불법 영업에 대한 폐쇄 및 수거조치 - 신고기준 위반시 영업폐쇄·신고취소·영업정지 - 영업의 폐쇄 또는 신고취소 전 청문실시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신고증 교부, 변경신고 포함)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내수면) -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운영 - 안전검사 대행기관지정취소(내수면) -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내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종합게임장 지정 - 종합게임장 지정 취소 - 종합게임장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 -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 교육통지서 통지 - 유통관련업자 교육계획 수립	
16개 사무	11개 사무	0개 사무

※ 기타 이양유형 사무는 없음

7)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정리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분석

<표 3-97>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1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1
2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40
99	기타 단위사무	0
합계		41

1)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단위사무

-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1개 단위사무는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임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지역단위 민방위대 운영

<표 3-98>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사무 비교(시·도 및 시·군·구)

시·도 사무(예시)	분석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 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추가	(민방위기본법) - 지역단위 민방위대 동원령 발령	추가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		1개 사무		-

2)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단위사무

-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관련 사무에 해당되는 3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7개, 시·군·구 이양사무 33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가스안전 관리(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학칙제정·개폐승인 등)
 -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운영(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승인 등)

<표 3-99>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사무 비교(시·도)

시·도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도 사무(예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추가 추가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학칙제정·개폐승인 - 국외훈련이수자 연구보고서 제출 등 - 특별훈련대상자에 대한 복귀명령 - 특별훈련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추가 추가 추가 추가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승인	추가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7개 사무		-

○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 다음과 같은 사무예시 추가 필요

- 가스 안전관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 구급차의 관리(구급차 운용 지도감독)

<표 3-100>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사무 비교(시·군·구)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에 필요한 사항 각인 또는 표시 -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에 합격증명서 교부 -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 사업의 휴, 폐지신고수리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사무예시가 없음

시·군·구 이양사무	분석결과	시·군·구 사무(예시)
- 용기 등(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검사	추가	
- 용기, 특정설비의 재검사	추가	
- 용기, 특정설비의 파기	추가	
- 제조 변경등록	추가	
- 제조등록업의 과징금 부과	추가	
- 제조등록취소	추가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선, 해임신고수리 및 해임요구	추가	
-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추가	
-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취소	추가	
- 과징금 부과	추가	
- 과태료 부과	추가	
- 안전관리규정	추가	
- 위해방지조치명령	추가	
- 청문	추가	
(도시가스 사업법)		
- 일반도시가스 안전관리자 해임요구	추가	
- 일반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 등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수리	추가	
- 일반도시가스공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추가	
- 일반도시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추가	
-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등	추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 벌금 및 과태료	추가	
- 안전관리규정 심사평가	추가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추가	
- 액화석유가스 공급 규정의 승인	추가	
- 액화석유가스사업 과징금 부과	추가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승계신고	추가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추가	
-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취소	추가	
- 위해방지조치 및 명령	추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구급차 운용 지도감독	추가	
33개 사무		-

3) 기타 단위사무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중 기타 단위사무로 분류된 단위사무는 없음

4)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정리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는 없음

7.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 종합

<표 3-101>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7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무	51
합계		51

1)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는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위사무

-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는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무에 해당되는 51개 단위사무를 이양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도 이양사무 28개, 시·군·구 이양사무 11개 시·도 및 시·군·구 이양사무 6개로 나타남
 - 기타 이양유형 6개 단위사무는 제외
- 분석결과
 - 사무 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개정 시 검토

<표 3-102>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p>(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시 사전교육 <p>(습지보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조사원의 위촉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시공업등록의 말소,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요청 -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의 접수 -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보고의명령 및 검사 <p>(전기용품안전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사무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사무 <p>(지적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측량업에 대한 보고 및 감독 - 지적측량업의 과태료 부과 - 지적측량업의 등록 - 지적측량업의 등록 취소 청문 - 지적측량업의 변경등록 - 지적측량업의 지위승계 - 지적측량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p>(약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p>(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물의 처리비용 한도액 결정 -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 신고사항 변경신고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및 보고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p>(의료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p>(전기통신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 또는 시험 -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p>(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승인 - 문제점 보고 - 자매결연 취소 - 지도 감독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p>(지적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승인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측량업자의 등록취소 등 <p>(측량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 정지 명령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의 지정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보고 및 검사 - 청문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 측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측량업의 지위승계 신고접수 - 측량업자의 신고의무사항 접수 <p>(항공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시설물의 설치제한 		
28개 사무	11개 사무	6개 사무

2)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정리

<표 3-103>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유형에는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무 중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사무명	기타 이양유형 단위사무	사무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승인 - 지번변경 승인 -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 축척변경승인 - 지적공부 반출승인 - 지적공부의 재작성 승인 	6
합계		6

8.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 종합

<표 3-104>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무

코드 구분 (중분류)		건수
999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무(교육(지원)청으로만 이양, 사무폐지, 지자체로부터 중앙정부로 환원 등 그 밖의 사무)	54
합계		54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교육(지원)청으로 이양된 단위사무 49개, ② 사무 자체가 폐지된 단위사무 3개, ③ 지자체로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단위사무 2개 등이 있음
- 분석결과
 - 사무 예시 보완과는 관계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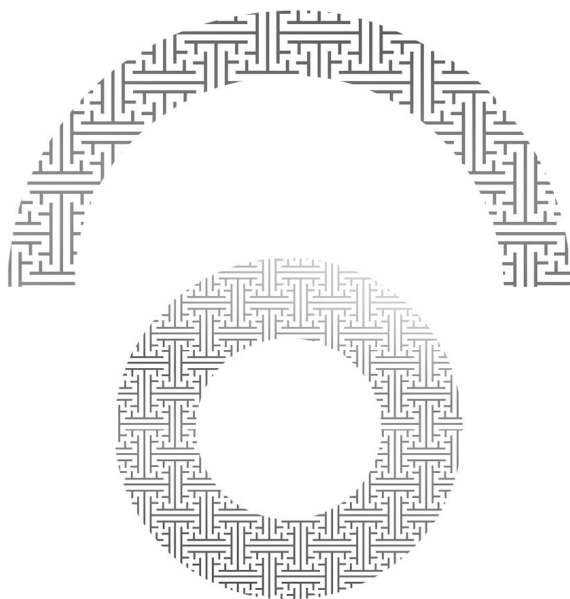
<표 3-105>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단위사무

이양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이양방향
- 중학교 설정	- 초·중등교육법	- 교육청→교육지원청
- 학생의 건강검진기관 선정(초, 중학교)	- 학교건강검사규칙	- 교육청→교육지원청
-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등에 협조 요청	- 학교보건법	- 국가, 교육청→국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 관리 점검	- 학교보건법	- 국가, 교육청→국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 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 기관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 발행	- 개별소비세법	- 국가→교육청
-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등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 가격사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 내용수정의 요청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 인정기준의 결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 인정의 취소처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 청문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이양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이양방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 농지법	- 국가→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 사립학교법	- 국가→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시의사의 선임	- 사립학교법	- 국가→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청문 실시	- 사립학교법	- 국가→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 사립학교법	- 국가→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인가	- 사립학교법	- 국가→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해산명령	- 사립학교법	- 국가→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해산인가	- 사립학교법	- 국가→교육청
- 시·도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이 연수하게 될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	-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 국가→교육청
-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제출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국가→교육청
- 시정조치 결과의 보고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국가→교육청
-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수립 및 통보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국가→교육청
-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국가→교육청
- 시도의회 의결사항의 위법판단시 보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국가→교육청
- 직급별 정원책정 조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 실국등기구의 설치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교육청
- *교육청본청에의무적으로두어야하는공통필수기구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국가→교육청
- 입국사증 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출입국관리법	- 국가→교육청

이양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이양방향
- 수업운영방법 지정	- 초중등교육법	- 국가→교육청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 국가→교육청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 초중등교육법	- 국가→교육청
-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선발 및 배정	- 초중등교육법	- 국가→교육청
- 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증명	- 초중등교육법특별소비세법	- 국가→교육청
- 분묘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가→교육청
- 조서의 공고 및 공고내용 등의 통지 및 의견접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가→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가→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원료의 통보 및 고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가→교육청
-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가→교육청
-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통보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가→교육청
-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 등에의 통보 및 고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가→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 수립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교육청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교육청
-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 영재교육진흥법	- 국가→국가, 교육청
- 영재학교의 지정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국가→국가, 교육청
-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국가→국가, 교육청
- 영재학교의 지정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 통보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국가→국가, 교육청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실시지역지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국가, 교육청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초중등교육법	- 국가→국가, 교육청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 초중등교육법	- 국가→국가, 교육청
- 행정상담위원 위촉에 따른 추천 또는 자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국가→사무폐지
- 행정상담위원 자격상실 및 해촉사유 발생통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국가→사무폐지
- 초지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	- 초지법	- 국가→사무폐지
- 호적사무의 비용부담	- 호적법	- 지자체→국가
- 호적사무의 관장	- 호적법	- 지자체→국가
	- 지방자치법	
54개 사무		-

제4장 분석결과 종합



제4장

분석결과 종합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추가 사무 없음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추가 사무예시 없음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경우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가족친화 환경 조성사업 시행 √ 고령자 고용·구인·구직활동 및 능력개발 지원	√ 가족친화 환경 조성사업 시행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지원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마. 국민건강증진사업	✓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 먹는 샘물의 관리 ✓ 응급의료 관리 및 지원	✓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 마약류의 관리 ✓ 약사의 관리 ✓ 시체의 관리 ✓ 응급의료 관리 및 지원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동물병원 및 동물치료소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동물병원 및 동물치료소 관리 ✓ 지역의료기관의 설치 및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아.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차.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의 경우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공유림관리,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가. 늪지·보(沔) 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다. 농업자재의 관리	✓ 신기술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바. 공유림관리	✓ 산지 관리 및 복구 지원	✓ 산지 관리 및 복구 지원
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사업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아. 가축전염병 예방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 관광지 관리 및 관광휴양사업 지원	✓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카. 중소기업의 육성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경우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자연보호 활동,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의 관리 ✓ 건설기술업(자)의 관리 ✓ 일반건설업(자)의 관리 ✓ 건축사의 관리 ✓ 전기공사업(자)의 관리 ✓ 전력기술업(자)의 관리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관리 ✓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의 관리 ✓ 건설기술업(자)의 관리 ✓ 건설업(자)의 관리 ✓ 전기사업(자)의 관리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관리 ✓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승인 ✓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관리 ✓ 주거환경개선의 계획수립·시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감정평가자 지정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정정 등 ✓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라.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진단 및 지도 ✓ 농어촌도로정비의 변경승인 및 (변경)보고 ✓ 도로통행료 징수대행 승인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통행료 징수대행 승인 권한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의 관리 ✓ 소음진동의 관리 ✓ 주택관리사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농지의 조사, 정비지구 지정 등 ✓ 소음진동의 관리 ✓ 생활악취의 관리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신고·접수·허가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사. 자연보호 활동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 협의승인 ✓ 소하천정비의 시행계획승인·종합계획제출·중기계획의 수립보고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의 관리 ✓ 수도사업(자)의 관리 ✓ 공공하수도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업(자)의 관리 ✓ 공공하수도의 관리
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 먹는물의 관리	✓ 추가 사무예시 없음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행업(자)의 관리 ✓ 유원시설업(자)의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 산지의 관리 ✓ 수목원조성 및 진흥 ✓ 산림의 보호 ✓ 산불예방 및 진화 관리 ✓ 자연공원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행업(자)의 관리 ✓ 유원시설업(자)의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 산지의 관리 ✓ 산림의 보호 ✓ 산불예방 및 진화 관리 ✓ 자연공원의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주차장의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추가 사무예시 없음	✓ 추가 사무예시 없음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의 관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리 	✓ 추가 사무예시 없음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등의 연수관리 ✓ 교원자격의 검정관리 ✓ 단기산업교육기관의 관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관리 ✓ 자율학교의 지정 및 관리 ✓ 학교급식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 관리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 지방문화원의 설치·운영 ✓ 국민체육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시설업(자)의 관리 ✓ 국민체육의 진흥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사무예시 없음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사무예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사무예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사무예시 없음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의 경우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사무에서 추가 사무예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사무	추가 시·도 사무	추가 시·군·구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지역단위 민방위대 운영	√ 지역단위 민방위대 운영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가스 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운영	√ 가스 안전관리 √ 구급차의 관리

7. 분석결과의 종합

- 본 연구는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 1,982개만 분석하였으며, 그간의 법령 변동 사항은 반영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를 보완할 때에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그간의 법령 변동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함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이양 완료사무 및 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 금창호, & 박기관. (2012).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연구」. 12(2): 61-77.
- 김남철. (20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9: 3-37.
- 손진상, & 김창승. (20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2): 133-159.
- 안영훈. (2009).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 149-171.
- 이월일. (1998).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2(2), 201-217.
- 임승빈, & 이기우. (2008).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869-900.
- 홍준현, 김재훈, & 이기우. (2005).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개편 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1-91.